

공유림등 매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(제19조의2제2항 관련)

매 수 금 액	요율기준 (매수금액에 대한 비율)	참 고
1억원 이하	20/1,000	감정수수료·측량수수료· 등기수수료 등 공유림등 의 매수에 필요한 다른 비용은 따로 가산한다.
1억원 초과 3억원 이하	200만원+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/1,000	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560만원+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6/1,000	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880만원+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/1,000	
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	1,580만원+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/1,000	
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2,780만원+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/1,000	
30억원 초과	3,780만원+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/1,000	